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66
----------	-------

제출년월일 : 2012.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상 분류를 실질적 사업 중심으로 명시(안 제1조)
- 나. 중복적인 사업 분류에 대해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분류(안 제3조)
- 다. 지역 내 다양한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시도하는 개인·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 신설(안 제3조제5호)
- 라.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정(안 제8조제5항)
- 마.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연 4회로 명시(안 제8조제6항)

3. 개정근거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계획 주민생활지원과-11235(2007. 5.16)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2007. 7.26. 조례 제674호)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 「지방자치법」 제9조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2. 5. 24. ~ 2012. 6. 13. (제출의견 없음)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감사담당관-5077호)

1) 제6조(수탁자 선정), 제11조(위탁의 취소)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탁 취소시 청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화 권고

2)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문에 규정

제6조(수탁자 선정)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④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제2항을 개정

② 구청장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 원안동의(가정복지과-25252호)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 8. 2)
- 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민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을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일반주민과 경제적 자립 역량”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에 둔다. 단, 센터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서 부속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
2.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
3.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4. 지역복지사업 및 교육문화사업
5.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

제4조제1항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을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을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을”을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 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 위원의 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시설운영,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3호 중 “예산편성 및 결산”을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 안건으로 올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2회”를 “연 4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거”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민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일반주민과 경제적 자립역량-----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u>----- ----- ----- -----.</p>
<p>제2조(위치 등) 센터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0번지에 둔다.</u></p>	<p>제2조(위치 등) <u>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u>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상암동)에 둔다.</u> 센터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u>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서 부속공간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3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고용·복지 증진사업</u> 2. <u>고용촉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및 취업알선</u> 3. <u>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u> 4. <u>취미·여가활동·문화·교양 교육사업</u> 5. <u>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u> 	<p>제3조(주요사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고용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u> 2. <u>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u> 3. <u>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u> 4. <u>지역복지사업 및 교육문화사업</u> 5. <u>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u>

현행	개정안
<p>제4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무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주 대상으로 고용 및 복지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③ (생략)</p>	<p>제4조(운영) ① ----- ----- ----- <u>취약계층 지역주민을</u> ----- <u>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u> ----- -----.</p> <p>② ----- ----- <u>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u> ----- ----- <u>따른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수탁자 선정) <u>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u>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6조(수탁자 선정) ① <u>제4조제1항에 따라</u> ----- ----- -----.</p> <p>② <u>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u>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u></p> <p>④ <u>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7조(수탁자 의무)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8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u>5인 이상 10인</u>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는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u>위원중</u>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임</u> 기간으로 한다.</p> <p>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센터의 사업계획 및 평가</p>	<p>제7조(수탁자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범위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운영위원회) ① -----</p> <p>----- 5명 이상 10명 -----.</p> <p>② -----</p> <p><u>해당하는 사람</u> -----.</p> <p>----- <u>해당하는 사람</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u>위원 중</u> -----.</p> <p>④ -----, --</p> <p>----- <u>전임 위원의 남은</u> -----.</p> <p>⑤ -----.</p> <p>1. 센터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2. 센터 운영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p> <p>3. 센터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⑥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제10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생략)</p> <p>② 구청장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2. 센터의 시설운영, 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p> <p>3. -----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 개발-----</p> <p>4. ----- ----- 회의 안건으로 올린 -----</p> <p>⑥ ----- 연 4회 ----- ----- 3분의 1 이상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제11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각 호의 규정에 따라 ----- -----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p>